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6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局)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국(局)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국(局)을 설치하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나. 지역현안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담당관을 설치하고 과를 조정함.

다. 기구 조정

1) 당초 : 2실·11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2읍·면

2) 조정 : 2국·1담당관·14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2읍·면

라. 정원 총수 조정

1) 정원 총수 : 679명 ⇒ 702명(증 23)

2) 집행기관 정원 : 665명 ⇒ 688명(증 23)

마.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1) 일반직 5급 정원 : 35명 ⇒ 38명(증 3)

가) 현행 : 35명(본청11명, 의회3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4명, 읍1명, 면11명)

나) 조정 : 38명(본청15명, 의회3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3명, 읍1명, 면11명)

2)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608명 ⇒ 628명(증 20)

가) 현행 : 608명(본청268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나) 조정 : 628명(본청300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37명, 읍39명, 면14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14조, 제120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6조·제24조·제29조·제30조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 169백만원 확보

다. 협 의 : 전 부서 협의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8. 30.~9. 18.
 - 나) 예고결과 : 결과요약서 붙임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 토의견	처리결과
김 훈 규 (거창군농업 회의소)	○ 최근 행정조직 개편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공동체 업무의 총괄조정 부서 신설하는 추세이기에 ○ 거창군 또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내의 농촌마을 개발과 마을만들기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가 요구되는 도시재생업무 등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 개발주도의 업무를 극복하고 농촌형의 유니버설(보편적)한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복원,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의 재배치가 요구됨. ○ 도시재생팀과 통합하여 디자인 도시과(또는 마을디자인과) 등의 명칭을 참작하여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총괄적 업무를 관장케 하는 것을 제안	○ 우리군은 이번 조직 개편시 상부기관과 관련있는 부서에 업무를 두어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가하고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 ○ 소관부서 - 도시재생업무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지역공동체업무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지역공동체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업무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경상남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미반영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담당관·과장·소장 직급 등)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장·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담당관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군 현안·역점 사항 추진,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육성, 투자유치 등 미래 전략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송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7.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에너지정책, 교통행정·운수 등 경제 교통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재해복구, 안전점검, 민방위, 통신· 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향노화 등 산림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 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
5.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등 건설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정,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에 둔다.

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를 둔다.

제8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
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4.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수도사업소

-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상수도과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
- ② 수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에 둔다.

- 제14조(소장) 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소관사무) 수도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경영,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2절 체육시설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체육시설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에 둔다.

제17조(소장) 체육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스포츠레저 정책수립·활성화
2. 스포츠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3절 거창사건사업소

제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사건사업소를 둔다.

② 거창사건사업소는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24에 둔다.

제20조(소장) 거창사건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거창사건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거창사건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 거창사건희생자 묘역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22조(읍·면) ① 법 제120조에 따라 읍·면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읍장·면장) 읍·면에는 읍장·면장을 두고 읍장·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읍장·면장은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주민 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분장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02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688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제26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신설과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과 분장사무 조정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기업지원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⑥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장”으로 한다.

⑦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평생교육센터소장”을 “인구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⑩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⑪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2조제4항 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⑫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⑭ 거창군 아람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⑮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⑯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⑰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⑱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⑲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⑳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농촌진흥과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농촌과장, 보건소장, 인구교육과장”으로 한다.

㉒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평생교육센터소장”을 “인구교육과장”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4호 중 “(민원봉사실)”을 “(민원소통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6호·제7호·제8호·제10호 중 “(평생교육센터)”를 “(인구교육과)”로 한다.

㉓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실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㉔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㉕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업지원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㉖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인구교육과”로 한다.

㉗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평생교육센터소장”을 “인구교육과장”으로 한다.

㉘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행복농촌과장”으로 한다.

㉙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행복농촌과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부서나 부서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나 부서장 등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거창군 보건소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거창군 일원
주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주상면 일원
웅양면 보건지소	거창군 웅양면 원촌4길 14-9	웅양면 일원
고제면 보건지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6	고제면 일원
북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313	북상면 일원
위천면 보건지소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5	위천면 일원
마리면 보건지소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845	마리면 일원
남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27	남상면 일원
남하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하면 무릉4길 19-27	남하면 일원
신원면 보건지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79	신원면 일원
가조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26	가조면 일원
가북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37	가북면 일원
거기 보건진료소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244-11	거기, 장포, 고대, 원남산, 포덕동, 보광, 송희
강천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강천장교길 19	산포, 우량, 석정, 강천, 금광, 어인, 용전, 군암, 노현
하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하곡1길 3	송산, 아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봉산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하구송길 33	탑선, 원기, 원봉계, 와룡, 용초, 구송, 둔기

명칭	위치	관할구역
개명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1804	개명 1,2구, 수내, 손항, 온곡, 학림, 원궁항, 산양
소정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1205	중산, 소정, 개삼, 탑불
월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439-14	산수, 월성, 내계, 황점, 병곡
모동 보건진료소	거창군 위천면 빼재로 881	모전, 석동, 원당, 무월, 당산, 황산 1,2구
고학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고신1길 14	병항, 고신, 고대, 상촌, 신기, 시목, 엄대, 서편, 동편
율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풍계1길 41	풍계, 상율, 월화, 영신, 학동, 성락
임불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임불1길 5	임불, 남불, 월포, 전척, 고척, 한산
진목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진목1길 20	춘전, 진목, 남진, 동령, 신기, 둔동, 외등
지산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하면 지산로 735-15	자하, 신기, 장전, 천동, 대사, 오가, 대야, 가천, 용동, 월곡
대현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대현길 20	내외탐, 소야, 대현, 비곡, 중유, 예동
양지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양지3길 4	원동, 양지, 수옥, 저전, 감악, 구사, 신기, 수다
도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439	대학동, 화곡, 도산당, 녹동, 부산
용암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717	몽석, 내촌, 송정, 용암, 개금, 공수, 박암, 옥산
중촌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1354	심방, 회남, 중촌, 추동, 해평, 용산, 율리

[별표 2]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퍼센트 이상	1퍼센트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퍼센트 이내	7퍼센트 이내	28퍼센트 이내	31퍼센트 이내	26퍼센트 이내	7퍼센트 이상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퍼센트 이내	97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내	92퍼센트 이상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6급 상당
비율	100퍼센트 이내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02 679	322 286	14	134	67 70	67 64	41 54	40	15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70 647	318 282	14	107	40 43	67 64	40 53	40	151
	4급	1	1							
	4~5 급	3	2		1		1			
	5급	38 35	15 11	3	5	4	1	3 4	1	11
	6급 이하	628 608	300 268	11	101	36 39	65 62	37 49	39	1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나. 관련조문 : 제25조(정원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구분	국비						
	세출						
	군비	169	1,012	1,032	1,052	1,073	4,338
소계(a)		169	1,012	1,032	1,052	1,073	4,338
총 비용(a-b)		169	1,012	1,032	1,052	1,073	4,338

3. 관련 의견

국가시책과 주민밀착 행정기능 강화에 따라 인력증가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9년 기준)

가. 정원 총수 증원 : 23명

나. 연간 인건비 증가액 : 1,012백만원

기본급 920백만원, 수당 등 92백만원

작성자 : 행정과장 신영수